#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638

발의연월일: 2025. 3. 4.

발 의 자:김미애·조정훈·임이자

김기현 · 인요한 · 박준태

박상웅 • 한지아 • 성일종

김선교 · 김종양 · 김민전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공공기관 기관장과 주요 임원의 정실주의에 의한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공공기관의 정실주의 인사 관행은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과 취 지를 저해하고 개혁과 업무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관련 분야의 업무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가 사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연장 선상의 각종 논란으로 공사사장이 장기간 공석인 상황에서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참사가 발생하였음.

항공 관련 사고는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므로 항공 관련 분야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주요 임원은 항공 안전과 공항 안전 등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과 관련 경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에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립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전문적인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신설).

#### 법률 제 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후보자(감사 후보자는 제외한다)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설립 목적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전문적인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적인업무 경험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추
	천위원회가 「한국공항공사
	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
	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후
	보자(감사 후보자는 제외한다)
	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
	사의 설립 목적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전문적인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적인
	업무 경험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